

[가입예시]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

-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10년만기, 10년납입, 아파트(100m²), 구조급수 1급, 상해 1급, 월납
- 보험료 예시(단위 : 원)

보장내용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남	여	남	여	남	여
화재손해(주택) (주계약)	1억원	700	700	700	700	700	700
도난손해(일반)	700만원	259	259	259	259	259	259
도난손해(명기가재)	100만원	74	74	74	74	74	74
주택(화재)임시거주비 (1일이상90일한도)	10만원	54	54	54	54	54	54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3천만원	1,560	810	1,830	930	2,220	1,470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3천만원	30	30	30	30	30	30
화상진단비	10만원	52	70	59	93	54	114
화상수술비	30만원	21	21	21	24	24	30
강력범죄피해(주택내)	100만원	4	4	4	4	4	4
보장보험료		2,754	2,022	3,031	2,168	3,419	2,735

- 예상해약환급금 (10년만기, 10년납입, 아파트(100m²), 구조급수 1급, 남자, 상해 1급, 40세, 보험료 3,600원)

(단위:원,%)

구분	납입 보험료	해약환급금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43,200	75	0.1 %	75	0.1 %	33	0 %
3년	129,600	14,376	11 %	14,376	11 %	14,014	10.8 %
5년	216,000	29,076	13.4 %	29,076	13.4 %	28,068	12.9 %
7년	302,400	45,940	15.1 %	45,940	15.1 %	43,949	14.5 %
10년	432,000	64,678	14.9 %	64,678	14.9 %	60,550	14 %

주1) 「예상해약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 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약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6년 현재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26.4.1. 현재 연단위 복리 1.60%)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 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26.4.1. 현재 연단위 복리 1.60%)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6) 가입 후 10년 미만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